
Policy and Law Report _Vol.140

- 정부 주요 정책 및 입법정보 등에 관한 동향 (2022.06.13.~ 2022.06.19) -

June 20, 2022

법무법인(유) 세종 입법전략자문팀(Legislative and Government Affairs Team)의 “주요 정책 및 입법 동향 레터”는 정부 주요정책, 국회에 접수된 의안현황, 입법(행정)예고 법안 현황 및 향후 국회의 주요 일정 등에 대한 신속한 정보제공을 통해 입법 및 정부규제 등과 관련하여 고객들께서 발빠르게 대응할 수 있도록 마련되었습니다. 특히, 기존 정책의 변경이나 고객들의 이해관계와 직결되는 법안이나 정부정책들은 빠짐없이 선별하여 추후 고객들께서 불이익이나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하는데 초점을 두고 있으므로, 매주 (또는 격주) 발송되는 '주요 정책 및 입법 동향 레터'를 잘 활용하신다면 업무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Letter 목차

1. 정부 주요 정책 동향
2. 주요 입법(안) 동향
 - ① 공포 법안
 - ② 입법(행정)예고 법안
 - ③ 법률 발의안
3. 향후 국회 주요 주간일정(안)
4. 향후 국회 토론회 및 세미나 주요 일정(안)

1. 정부 주요 정책 동향 *해당 제목을 클릭하시면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부처	내용	일시								
교육부	<p>• 사립대학의 재정 여건 개선을 위해 재산 관련 규제 대폭 완화</p> <p>교육부는 사립대학(법인)이 보유 재산을 유연하게 활용하여 적극적으로 수익을 창출하고 재정 여건을 개선해 나갈 수 있도록 재산 관련 규제를 대폭 완화하기 위해 사립대학(법인) 기본 재산 관리 안내(지침)를 개정함</p> <p>이번 지침 개정은 유휴 교육용 기본재산을 수익용 재산으로 용도변경 허가와 관련한 대법원 판결*(2021.4)과 그간의 사립대학(법인)들의 건의 사항을 반영하여 지난해 말부터 개선을 검토해 온 사안으로서, 새 정부의 “더 큰 대학자율로 역동적 혁신 허브 구축” 기조에 부응하여 법령을 개정하지 않고 사립대학(법인)의 재산 관리에 대한 규제 완화가 가능한 사안들을 우선 반영한 것임</p> <p>* 학교법인의 교육용 재산을 수익용 재산으로 용도변경하는 것을 사립학교법 제29조제6항(교비회계 수입·재산의 타 회계 전출 금지)을 근거로 거부하는 것은 위법하고, 법 적용을 잘못된 것이라는 취지의 판결</p> <table border="1" data-bbox="327 1086 1313 1977"> <thead> <tr> <th data-bbox="327 1086 489 1137">구분</th> <th data-bbox="489 1086 1313 1137">주요 개선 내용</th> </tr> </thead> <tbody> <tr> <td data-bbox="327 1137 489 1406">유휴 교육용 재산의 수익용 용도변경 허가 기준 완화</td> <td data-bbox="489 1137 1313 1406">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행) 유휴 교육용재산의 수익용 용도변경은 가능하나, 재산 가액만큼의 교비회계 보전을 조건으로 부과 ▪ (개선) 유휴 교육용재산은 교비회계 보전없이 수익용으로 용도변경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보전이 필요한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보전조치 ⇒ 유휴 재산을 수익 창출에 적극 활용하고 수익금을 교육환경 개선 등에 재투자하여 대학 교육의 질 제고 가능 </td> </tr> <tr> <td data-bbox="327 1406 489 1675">수익용재산 확보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처분금 용도 확대</td> <td data-bbox="489 1406 1313 167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행) 확보 기준을 초과하는 수익용재산인 경우에도 처분 후 그 처분금을 교비회계 보전, 세금납부로만 제한하여 활용 가능 ▪ (개선) 기준액을 초과하는 수익용재산의 처분금은 사립대학과 학교법인의 이익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다양한 용도로 사용 가능 ⇒ 사립대학이 수익용재산을 활용하여 일시적으로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는 등 보다 효과적으로 경영 상황 개선 가능 </td> </tr> <tr> <td data-bbox="327 1675 489 1977">유휴 교사시설 내 입주 가능 업종 규제를 ‘네거티브’ 전환</td> <td data-bbox="489 1675 1313 1977">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행) 유휴 교사시설 내 입주 가능한 업종을 제한적으로 확대 중 (Positive 규제) ▪ (개선) 교육 및 연구 활동에 지장을 주지 않고, 다른 법령에 따라 학교 내 설치가 금지된 시설·업종이 아니면 제한없이 입주 허용 (Negative 규제) ⇒ 사립대학이 유휴 교육용 토지, 건물 등을 다양한 목적에 보다 유용하게 활용 가능 </td> </tr> </tbody> </table>	구분	주요 개선 내용	유휴 교육용 재산의 수익용 용도변경 허가 기준 완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행) 유휴 교육용재산의 수익용 용도변경은 가능하나, 재산 가액만큼의 교비회계 보전을 조건으로 부과 ▪ (개선) 유휴 교육용재산은 교비회계 보전없이 수익용으로 용도변경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보전이 필요한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보전조치 ⇒ 유휴 재산을 수익 창출에 적극 활용하고 수익금을 교육환경 개선 등에 재투자하여 대학 교육의 질 제고 가능	수익용재산 확보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처분금 용도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행) 확보 기준을 초과하는 수익용재산인 경우에도 처분 후 그 처분금을 교비회계 보전, 세금납부로만 제한하여 활용 가능 ▪ (개선) 기준액을 초과하는 수익용재산의 처분금은 사립대학과 학교법인의 이익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다양한 용도로 사용 가능 ⇒ 사립대학이 수익용재산을 활용하여 일시적으로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는 등 보다 효과적으로 경영 상황 개선 가능	유휴 교사시설 내 입주 가능 업종 규제를 ‘네거티브’ 전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행) 유휴 교사시설 내 입주 가능한 업종을 제한적으로 확대 중 (Positive 규제) ▪ (개선) 교육 및 연구 활동에 지장을 주지 않고, 다른 법령에 따라 학교 내 설치가 금지된 시설·업종이 아니면 제한없이 입주 허용 (Negative 규제) ⇒ 사립대학이 유휴 교육용 토지, 건물 등을 다양한 목적에 보다 유용하게 활용 가능	2022-06-14
구분	주요 개선 내용									
유휴 교육용 재산의 수익용 용도변경 허가 기준 완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행) 유휴 교육용재산의 수익용 용도변경은 가능하나, 재산 가액만큼의 교비회계 보전을 조건으로 부과 ▪ (개선) 유휴 교육용재산은 교비회계 보전없이 수익용으로 용도변경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보전이 필요한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보전조치 ⇒ 유휴 재산을 수익 창출에 적극 활용하고 수익금을 교육환경 개선 등에 재투자하여 대학 교육의 질 제고 가능									
수익용재산 확보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처분금 용도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행) 확보 기준을 초과하는 수익용재산인 경우에도 처분 후 그 처분금을 교비회계 보전, 세금납부로만 제한하여 활용 가능 ▪ (개선) 기준액을 초과하는 수익용재산의 처분금은 사립대학과 학교법인의 이익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다양한 용도로 사용 가능 ⇒ 사립대학이 수익용재산을 활용하여 일시적으로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는 등 보다 효과적으로 경영 상황 개선 가능									
유휴 교사시설 내 입주 가능 업종 규제를 ‘네거티브’ 전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행) 유휴 교사시설 내 입주 가능한 업종을 제한적으로 확대 중 (Positive 규제) ▪ (개선) 교육 및 연구 활동에 지장을 주지 않고, 다른 법령에 따라 학교 내 설치가 금지된 시설·업종이 아니면 제한없이 입주 허용 (Negative 규제) ⇒ 사립대학이 유휴 교육용 토지, 건물 등을 다양한 목적에 보다 유용하게 활용 가능									

부처	내용	일시				
	<table border="1"> <tr> <td data-bbox="327 353 491 689"> 교지 위에 수익용재산 건물 건축 가능 </td> <td data-bbox="491 353 1316 689">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행) 교육 관계 법령상 제한이 없음에도 교지 위에는 교육용재산인 건물(교육용)의 설치만 가능한 것으로 해석 (학교법인 소유 수익용건물 설치 제한) ▪ (개선) 교지의 일부를 수익용 건물 부지로 제공해도 교지 확보율 기준을 충족하고, 적절한 비용 분담(학교법인, 대학)이 이루어지면 교지 내 수익용재산 건물 설치 가능 <p>⇒ 사립대학들이 유휴 부지를 보다 유연하게 활용 가능</p> </td> </tr> <tr> <td data-bbox="327 689 491 958"> 차입 자금의 용도 제한을 완화 </td> <td data-bbox="491 689 1316 958">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행) 학교법인의 일시적 운영비 부족을 자금 차입이 필요한 ‘운영상 불가피한 사유’로 인정하지 않음 ▪ (개선) 학교법인의 상환계획이 적절하고 상환능력이 충분하다면 (법인) 운영비 충당을 위한 차입도 허용 <p>⇒ 일시적 경영상 어려움을 겪는 사립대학들이 긴급하게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여 더 큰 재정 위기를 방지 가능</p> </td> </tr> </table>	교지 위에 수익용재산 건물 건축 가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행) 교육 관계 법령상 제한이 없음에도 교지 위에는 교육용재산인 건물(교육용)의 설치만 가능한 것으로 해석 (학교법인 소유 수익용건물 설치 제한) ▪ (개선) 교지의 일부를 수익용 건물 부지로 제공해도 교지 확보율 기준을 충족하고, 적절한 비용 분담(학교법인, 대학)이 이루어지면 교지 내 수익용재산 건물 설치 가능 <p>⇒ 사립대학들이 유휴 부지를 보다 유연하게 활용 가능</p>	차입 자금의 용도 제한을 완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행) 학교법인의 일시적 운영비 부족을 자금 차입이 필요한 ‘운영상 불가피한 사유’로 인정하지 않음 ▪ (개선) 학교법인의 상환계획이 적절하고 상환능력이 충분하다면 (법인) 운영비 충당을 위한 차입도 허용 <p>⇒ 일시적 경영상 어려움을 겪는 사립대학들이 긴급하게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여 더 큰 재정 위기를 방지 가능</p>	
교지 위에 수익용재산 건물 건축 가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행) 교육 관계 법령상 제한이 없음에도 교지 위에는 교육용재산인 건물(교육용)의 설치만 가능한 것으로 해석 (학교법인 소유 수익용건물 설치 제한) ▪ (개선) 교지의 일부를 수익용 건물 부지로 제공해도 교지 확보율 기준을 충족하고, 적절한 비용 분담(학교법인, 대학)이 이루어지면 교지 내 수익용재산 건물 설치 가능 <p>⇒ 사립대학들이 유휴 부지를 보다 유연하게 활용 가능</p>					
차입 자금의 용도 제한을 완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행) 학교법인의 일시적 운영비 부족을 자금 차입이 필요한 ‘운영상 불가피한 사유’로 인정하지 않음 ▪ (개선) 학교법인의 상환계획이 적절하고 상환능력이 충분하다면 (법인) 운영비 충당을 위한 차입도 허용 <p>⇒ 일시적 경영상 어려움을 겪는 사립대학들이 긴급하게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여 더 큰 재정 위기를 방지 가능</p>					
<p>과학 기술정보 통신부</p>	<p>• 새정부 과학기술 정책방향 간담회 개최</p> <p>과학기술정보통신부 새정부 과학기술 정책의 5년간의 이정표이자, 로드맵이 될 “제5차 과학기술 기본계획(’23~’27)”과 새정부 국정과제 간의 정합성과 연계성을 확보하기 위해 ‘새정부 과학기술 정책 방향 간담회’를 개최함</p> <p>주요 내용으로는</p> <o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기술패권 시대에 외교·안보·국방·경제적으로 영향력이 큰 국가전략기술을 임무지향적으로 육성하여 기술주권 확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예시) 개발·확보 체계 구축, 전략적 국제협력을 통한 기술동맹 강화 및 인력 확보 등 ② 기술개발 중심의 연구개발에서 벗어나 탄소중립·디지털전환·고령화 등 국가가 당면한 문제 해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예시) 탄소중립 중점기술 대상 기술혁신 전략로드맵 수립·추진, 산업 전반의 디지털 혁신 가속화 및 신규서비스 창출, 100세 시대 대비 개인맞춤형 질병 예방·관리 체계 마련 등 ③ 민간이 주도하여 성장동력을 만들어 갈 수 있도록 기업의 혁신역량을 높이고 기업이 원하는 방식으로 연구개발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예시) 민간 연구개발을 활성화하는 투자여건 조성, 민간-정부 협력 상시채널 활용, 연구개발 전주기에 걸쳐 기업이 주도적으로 참여하는 수행체계 구축 등 	<p>2022-06-13</p>				

부처	내용	일시
	<p>④ 양적인 투입보다는 질적인 성과에 초점을 맞추어 연구성과의 활용을 높이기 위한 연구개발 체계를 개선 및 투자 전략성 강화</p> <p>- (예시) 국가 핵심 지식재산(IP) 창출 및 보호 체계 강화, 사업화 촉진을 위한 기술이전 전담조직의 고도화 및 제도개선, 연구성과 활용 활성화를 위한 평가체계 개선 등</p>	
산업통상 자원부	<p>• 기업 프로젝트와 직결된 규제개선 집중 지원</p> <p>산업통상자원부는 민간의 역동성 회복과 산업활력 제고를 위해서는 규제혁신이 가장 시급한 과제임을 고려하여, 기업투자 촉진을 위한 「4대 산업규제 혁신방향」을 추진할 계획임</p> <p>주요 내용으로는</p> <p>① 기업의 투자성과 창출과 직결되는 ‘투자프로젝트 관련 규제’를 집중 발굴하여 산업부 소관 규제는 신속히 개선하고, 타부처 규제는 총리실 주관 규제혁신전략회의에 상정하여 개선</p> <p>② 과도한 규제비용을 초래하는 ‘킬러 규제’ 중 기업이 핵심적으로 요구하는 환경, 노동, 교육 등 분야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관계부처와 협의</p> <p>③ 기업 활동에 실질적 부담을 야기하는 각종 평가·협의 제도 등 숨은 규제를 조사하여 일괄 정비</p> <p>④ 민간시장 활성화를 가로막는 공공부문의 과도한 시장개입 사례를 발굴하여 공공부문 역할 재조정</p>	2022-06-16
산업통상 자원부	<p>• 민간주도·성과중심으로 산업기술 R&D 대수술 - 「제1차 산업기술 CTO 라운드테이블」 개최</p> <p>산업통상자원부는 국가R&D 110조 시대에 민간부문의 기술혁신을 담당하는 반도체·이차전지·로봇·모빌리티 등 주요 산업 CTO의 의견을 청취하고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제1차 산업기술 CTO 라운드테이블」을 개최함</p> <p>“새 정부의 산업기술 혁신전략”의 주요 내용으로는</p> <p>① 높은 리스크로 민간 투자가 활발하지 않은 신산업 분야의 혁신을 촉진하기 위해 향후 5년간 10개의 목표지향형 메가 임팩트(Mega Impact) 프로젝트를 추진하기로 함</p> <p>*경제·사회적 난제 해결(예 : K-반도체, 수소경제, 미래 모빌리티 등)을 목표로 기술개발·제도개선·기반구축·사업화를 포괄하는 복합사업</p> <p>- R&D의 궁극적 목표인 사업화를 위해 기획 단계부터 특허·표준·규제 등을 先 분석해 과제기획에 반영하고, 기술창업 등 사업화에 투자하는 산업기술 혁신펀드를 향후 3년간 1조원 규모로 조성</p>	2022-06-16

부처	내용	일시
	<p>② 기존 선진국 추격형(fast follower)에서 벗어나 선도형(first mover)로 전환하기 위해 파괴적 혁신(Disruptive & drastic innovation) R&D사업*을 신설하여 새로운 시각과 방식의 신제품 서비스 개발을 지원할 계획</p> <p>*최고전문가 그룹이 신기술·신제품 개발 과제를 기획하고(Pre-R&D), 세부 기술개발은 본 R&D를 통해 추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아울러, 미래산업의 판도를 바꾸는 알키미스트 프로젝트도 올해 3개의 신규 테마(노화 역전, 초실감 메타버스 시각화 등)를 시작으로 총 12개의 테마를 선정해 경쟁형 방식으로 '31년까지 총 4,142억원을 지원 <p>③ 산업기술 R&D를 통한 인적·물적 자산의 체계적 축적과 활용을 위해 산업기술 가치사슬 플랫폼인 TVC(Tech Value Chain)를 새롭게 구축하고, R&D 성과물에 대한 분석·환류 시스템을 고도화</p> <p>④ 민간기업의 R&D 수행과정 상 걸림돌이 되는 규제를 적극 해소하기 위해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R&D 예비타당성조사 규모를 현행 500억원에서 1,000억원으로 확대 개편하고, 전략과 기획 중심으로 산업기술 지원기관(전략기획단, 산업기술진흥원, 산업기술평가관리원) 체계를 전면 개편</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업 당 동시수행 과제 수(중소 3개, 중견 5개)를 전면 폐지하고, 매출 3천억원 미만의 초기 중견기업의 R&D 자기부담률은 현행 총사업비 50%에서 중소기업 수준인 33%로 하향 조정 - 신규 기술개발 과제에만 한정되었던 R&D 자율성 트랙(연구목표 변경 사업비 정산 등 연구 자율성을 부여) 적용대상을 계속과제, 기반구축 과제까지 확대하고 사업화 매출 우수기업의 기술료를 감면하는 등, R&D 프로세스 전반의 과감한 규제혁파과 인센티브 확대를 병행 <p>⑤ 글로벌 공급망 재편과 국내기업 역량강화를 위해 현재 2% 수준인 국제 공동 R&D 과제(해외기관 참여 과제)는 '25년 15%까지 확대</p> <p>⑥ 정책과제를 차질 없이 추진하기 위해 기업과 지원기관·정부 간 역동적인 기술혁신 얼라이언스를 구축해 R&D 제도개선 및 사업화 지원체계 구축 등 산업기술 R&D 시스템을 고도화</p>	

부처	내용	일시
금융 감독원	<p>• 금융시장 리스크 점검회의 개최</p> <p>금융감독원은 「금융시장 리스크점검회의」를 개최하여 美 FOMC* 이후 국내외 금융시장 동향 및 주요 리스크 요인을 점검하고 대응방안을 논의함</p> <p>* FOMC(Federal Open Market Committee, 미국 연방공개시장위원회)</p> <p>주요 내용으로는</p> <p>① (단기금융시장) 유동성 스트레스테스트 실시 결과를 토대로 유동성 부족 가능성이 높은 금융회사에 대해 선제적 유동성 확충을 지도</p> <p>② (외환시장) 환율 상승, 스왑베이스스 확대 등 외환 수급 여건이 악화되고 있어 ELS 마진콜 위험 등이 발생할 수 있는 취약 금융회사를 중심으로 외화유동성을 철저히 관리토록 유도</p> <p>③ (부동산 금융) 최근 크게 늘어난 非은행업권 해외 대체투자 및 PF대출, 부동산 채무보증 등 부동산 익스포저의 손실발생 가능성에 대비하여 점검 및 충분한 총당금 적립 유도</p> <p>④ (취약계층 지원 등) 가파른 금리 상승으로 어려움이 심화되는 자영업자 등에 대한 금융부담 완화 방안 모색 및 금융회사의 손실흡수능력 확충 지도</p>	2022-06-16

2. 주요 입법(안) 동향

① **공포 법안** *해당 법률안을 클릭하시면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소관부처	법률안	공포일자
기획재정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 (2022.9.15. 시행 예정, 제111조제1항은 공포후 3개월 경과후 시행 예정) <p>국가계약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일반적인 계약 방법에 따라 경우 계약의 목적을 달성하기 곤란한 혁신적인 물품·사업 등에 관한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한시적(限時的)으로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별도의 기준·절차에 따라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하는 시범특례 제도를 도입하여 혁신적인 신기술·신산업의 조달시장 진출을 지원하고 국가계약 제도의 유연성을 높이는 한편,</p> <p>계약상대자가 성질상 분할할 수 있는 공사 등에 관한 계약상의 의무 일부만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전체 계약보증금에서 기성부분 또는 기납부분에 해당하는 계약보증금을 제외한 나머지를 국고에 귀속하도록 하여 중소기업의 부담을 완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제47조의2 신설, 제51조제2항 신설, 제65조제1항, 제111조제1항)</p>	2022-06-14
환경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2022.6.14. 시행) <p>음식물류 폐기물 발생량이 적은 다류(茶類) 또는 아이스크림류를 조리·판매하는 휴게음식점영업자는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 억제 및 처리 계획 신고 등의 의무를 이행해야 하는 음식물류 폐기물 다량 배출 사업자의 범위에서 제외하여 휴게음식점영업자의 영업 규제를 완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제8조의4제2호, 제11조의2제4항 삭제, 제37조제1항제2호)</p>	2022-06-14
금융위원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일부개정」(2022.6.15. 시행) <p>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확산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민에 대한 지원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해 발행하는 무기명식(無記名式) 선불카드의 발행권면금액 최고한도를 2022년 12월 1일까지 현행 5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상향하려는 것임 (제7조의2제1항 단서, 제7조의2제1항제2호 신설, 제7조의2제1항제3호 삭제)</p>	2022-06-15

② 입법(행정) 예고 법안 *해당 법률안을 클릭하시면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소관부처	법률안	예고일자
환경부	<p>•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p> <p>지방자치단체가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와 지방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에 통보해야 하는 행정계획을 규정하고, 탄소중립지원센터 지정 가능 기관·단체를 확대하는 등 지역 탄소중립 정책추진에 필요한 개정 소요를 반영해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들을 보완하려는 한편, 기후변화영향평가 시행(‘22.9.25)에 앞서 평가대상을 명확히 하는 등 제도 이행에 필요한 일부 사항을 보완하려는 것임</p> <p>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통보해야 하는 행정계획 규정 (안 제9조제5항 및 별표1의2 신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법 제14조제2항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탄소중립 녹색성장 시·도계획 또는 시·군·구계획과 관련이 있는 행정계획을 수립·변경하려는 때에는 위원회와 지방위원회에 그 내용을 통보하도록 한 규정에 따른 행정계획의 목록을 명시 <p>② 통계관리위원회 구성 및 지자체 위원의 직급기준 조정 (안 제39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 온실가스 통계관리를 원활히 수행하기 위해, 온실가스 종합정보센터 내 국가 및 지역통계관리위원회의 구성 근거를 마련하고, 현재 지방자치단체의 고위공무원으로 한정된 위원의 직급 기준을 실장·국장급으로 조정 <p>③ 탄소중립 지원센터로 지정할 수 있는 기관·단체 추가 (안 제63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정할 수 있는 탄소중립지원센터 지정 가능 기관·단체에 지방자치단체 출연 연구원을 추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택의 폭을 넓히도록 함 <p>④ 탄소중립이행책임관 직급 기준 확대 (안 제72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방자치단체에서 탄소중립 정책을 보다 강력히 추진하기 위해, 현재 실장·국장급으로 한정된 탄소중립이행책임관의 직급 기준을 확대해 실장·국장급 이상으로도 지정할 수 있도록 함 <p>⑤ 기후변화영향평가 대상사업의 명확화 등 이행상 미비점 보완 (별표2)</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평가대상에서 제외되는 산업단지를 개발된 산업단지를 정비하는 재생사업으로 한정하는 등 대상이 되는 계획·사업을 명확히 하고, 법령 개정 등으로 신규 평가대상이 되거나 두개 이상의 복합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에 평가 대상여부 등을 규정한 비고(제2호에서 제7호) 신설 <p>※ 의견 제시기간 : 6/14(화)~7/26(화)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 또는 환경부(탄소중립이행 T/F)로 제출</p>	2022-06-14

소관부처	법률안	예고일자
국토 교통부	<p>•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수정안)」</p> <p>건설산업의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 및 부실공사로부터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불법하도급 등 불공정행위 신고 및 신고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건설산업기본법이 개정(제18823호, 공포: 2022.2.3., 시행: 2022.8.4.)됨에 따라, 위임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기 위해 하위법령을 개정하고자 함</p> <p>① 불공정행위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 (안 제34조의9 신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포상금 지급대상자를 불공정행위 사실과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자료를 최초로 제출한 자로 규정 - 포상금은 200만원 이내에서 지급하고, 불공정행위를 한 자에 대한 행정처분이 확정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포상금 지급 - 포상금 지급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해 공정건설지원센터의 운영업무를 수행하는 지방국토관리청에 포상금지급심사위원회 설치 - 포상금 지급의 구체적 기준, 절차·방법 등 세부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고시’ 마련 <p>※ 의견 제시기간 : 6/13(월)~7/4(월)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 또는 국토교통부(건설산업과)로 제출</p>	2022-06-13

③ **법률 발의안** *해당 법률안을 클릭하시면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소관위	법률안	제안 일자
	<p>•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배준영의원 등 10인)」</p> <p>최근 시중 은행의 경우 금리 인상에 따른 예대금리차의 증가로 인하여 높은 수익을 얻고 있는데, 이와 관련하여 은행의 예대금리가 적절한지에 대한 문제 제기가 이어지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은 금융당국의 은행 금리에 관한 감독 규정이 미흡한 실정임</p> <p>이에 은행에 대해 예금금리와 대출금리 및 그 차이를 정기적으로 공시하도록 하고, 금융위원회는 은행 금리 산정의 합리성과 적절성을 검토하여 필요한 경우 한국은행으로부터 의견을 들어 개선 등의 조치를 권고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은행 금리를 감독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안 제52조의2제6항부터 제8항까지 신설)</p>	2022-06-10
정무위원회	<p>•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용우의원 등 10인)」</p> <p>현행법에서는 다른 법령에 따른 인가·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업(業)으로 하는 행위 중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받는 행위 등을 유사수신행위로 규정하여 금지하고 있음</p> <p>최근 스테이블 코인으로 불리는 가상자산이 폭락하여 대규모 투자 피해가 발생하였음에도 현행법상으로는 처벌할 수 없어, 가상자산을 이용한 유사수신행위에 대하여 사각지대가 존재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p> <p>이에 예치한 가상자산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가상자산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금전 또는 가상자산을 받는 행위를 유사수신행위 중 하나로 규정하여 금지함으로써 가상자산이용자를 보다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 (안 제2조제5호 신설)</p>	2022-06-13
	<p>•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용우의원 등 13인)」</p> <p>코로나19의 영향으로 비대면 거래가 확산되면서 온라인 플랫폼시장의 규모가 더욱 커지고 있으며, 온라인상에서 비합리적인 소비를 유도하는 기업의 사용자 인터페이스(user interface), 이른바 ‘다크패턴’에 대한 관심 또한 세계적으로 증가하고 있음</p>	2022-06-14

소관위	법률안	제안 일자
정무 위원회	<p>최근 사람을 속이기 위해 설계된 사용자 인터페이스로 인해 소비자의 선택권이 침해당하고 있으며, 이는 소비자의 독립적인 구매결정을 해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p> <p>이에 전자상거래를 하는 사업자 또는 통신판매업자에게 소비자 결정을 방해하는 행위를 금지하도록 함으로써,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려는 것임 (안 제21조제1항제8호 신설)</p>	
	<p>•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이정문의원 등 11인)」</p> <p>최근 간편결제·송금 등의 지급결제 서비스 규모가 확대됨에 따라 전자금융업자가 보유한 선불전자지급 자금의 규모도 대폭 증가하고 있음. 그런데 전자금융업자의 경영악화, 도산 등으로 인한 지급 불능 시 이용자 자금의 보호장치는 미흡하여 관련 제도를 마련하여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p> <p>이에 선불전자지급수단을 발행한 금융회사 또는 선불전자금융업자가 이용자로부터 선불전자지급수단 보유와 관련하여 사전에 지급받은 금전인 선불충전금을 고유재산과 구분하여 은행에 예치·신탁하고, 관리기관은 국채증권을 매수하는 등 안전한 방법으로 관리하도록 함</p> <p>그리고 이를 위반한 자를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금융회사 또는 선불전자금융업자가 보유하는 선불충전금을 제도적으로 보호함으로써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높이려는 것임 (안 제2조제4호의2 신설 등)</p>	2022-06-14
	<p>•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정문의원 등 11인)」</p> <p>현행 「금융투자업규정」은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가 투자자로부터 금융투자상품의 매매, 그 밖의 거래와 관련하여 예약받은 금전의 이용대가를 투자자에게 지급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는 투자매매업자등에게 새로운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으로 법률에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제기됨</p> <p>한편, 최근 증권사들이 투자자에게 받은 청약증거금을 금융기관에 예치하여 얻은 이자수익의 전부를 투자자에게 돌려주지 아니하고 증권사의 수익으로 처리하여 문제가 되고 있음</p> <p>이와 관련하여 감사원은 청약증거금이 개인과 법인 등 일반투자자가 기업공개나 유상증자 공모에 참여하여 주식을 사고자 할 경우 계약금 명목으로 금융투자회사에 예약하는 투자자에 탁금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투자자예탁금이용료 지급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금융당국에 통보한 바 있음</p> <p>이에 청약증거금이 투자자예탁금에 포함된다는 사실을 명시하고 투자자들이 청약증거금에 대한 이용료를 지급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투자매매업자등의 투자자예탁금 이용료 지급 의무를 법률에 직접 규정하여 법체계를 정비하고자 함 (안 제74조의2 신설 등)</p>	2022-06-14

소관위	법률안	제안일자
	<p>•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용우의원 등 11인)」</p> <p>현행법은 개인정보처리자에게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각종 안전조치 의무를 부과하고, 개인정보 보호위원회가 각 기관의 개인정보 관리 수준 및 실태를 조사하여 이러한 의무의 준수 여부 등을 파악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p> <p>그러나 최근 구청 공무원을 통해 개인정보가 외부로 유출되어 강력범죄에 이용되는 사건이 발생하였는데, 조사결과 개인정보의 무단 열람을 방지하는 안전장치의 미비가 주요 원인으로 지적되어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보호에 여전히 큰 허점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음</p> <p>이에 개인정보 보호위원회로 하여금 매년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보호 수준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개선을 권고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관리·감독을 더욱 체계적으로 실시하도록 하려는 것임 (안 제11조의2 신설 등)</p>	2022-06-15
기획재정위원회	<p>•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태년의원 등 10인)」</p> <p>음악, 미술, 체육 등 예체능 교육은 현행 공교육체계 내에서 교육이 어려우나, 재능을 조기에 발견하고 개발하기 위해서는 유년기 교육이 필요함. 또한 예체능 학원이 방과후 등하교 및 돌봄 기능도 일부 하고 있어, 초등학생 상당수가 필수적으로 다니고 있음. 현재는 취학전 아동의 학원비 등을 특별세액공제하고 있으나, 초등학교·중학교에 다니는 자녀라 할지라도 등·입시 교육과 관계가 적은 예체능 과목의 학원 교육비에 한해 특별세액공제를 적용해 국민의 교육비 부담을 일부 완화하고자 함</p> <p>또한 가상자산소득 5천만원 이하에 대해 비과세하고, 세율을 금융투자소득 과세와 동등하게 하며, 투자손실이 발생하는 경우 5년간 이월하여 공제하고자 함</p> <p>주요 내용으로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고등학교 취학전 아동의 음악, 미술, 무용 및 체육 교습비에 대한 특별세액공제를 도입함 (안 제59조의4제3항제1호마목 신설) ② 가상자산소득의 세율을 금융투자소득의 세율과 동일하게 함 (안 제64조의3제2항) ③ 가상자산투자에서 손실이 발생한 경우 5년간 이월해 공제함 (안 제64조의3제2항제1호 및 제2호 신설) 	2022-06-10

소관위	법률안	제안일자
	<p>•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우택의원 등 11인)」</p> <p>현행법은 법인세율의 과세표준 구간을 4단계로 구분하고, 3천억원 초과 구간에 대하여 25%의 최고세율을 적용하여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음</p> <p>그러나 국회예산정책처의 ‘2020 조세수첩’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법인세 최고세율은 OECD 회원국 평균 법인세 최고세율인 21.5%보다 높은 수준으로, 세계 주요국들이 국내 기업의 경영활동을 촉진하고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서 법인세율의 인하를 추진하는 추세인 반면 우리나라는 여전히 다른 선진국에 비해 높은 최고세율을 유지하고 있음</p> <p>이에 과세표준 구간을 현행 4단계에서 3단계로 단순화하고, 법인세 최고세율을 25%에서 22%로 하향 조정함으로써 국내 기업의 법인세 부담을 경감하고 해외 기업의 투자를 유인하려는 것임 (안 제55조제1항)</p>	2022-06-16
과학 기술정보 방송통신 위원회	<p>•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신현영의원 등 14인)」</p> <p>현행법은 유통이 금지되는 정보를 나열하여 규정하고,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로 하여금 방송통신위원회의 심의에 따라 해당 정보의 처리를 거부·정지·제한하도록 하고 있음</p> <p>그러나 최근 온라인 플랫폼 공간에서 벌어지는 성적 괴롭힘은 개인의 인격을 표상하는 캐릭터 등을 그 대상으로 하는 등 그 형태가 다양화되고 있으나, 현행법상의 제재 규정이 명확하지 않아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고, 온라인상에서 벌어지는 각종 성범죄의 경우 수사당국이 압수영장을 발부받기 전까지 증거물을 압수하기 어렵고, 압수영장을 발부받는 동안 피해 영상물은 광범위하게 유포될 위험성이 있다는 지적이 있음</p> <p>이에 정보통신망에서 유통이 금지되는 불법정보에 성적 인격권을 침해하는 내용의 정보가 포함되도록 하고, 수사기관의 장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방송통신위원회가 온라인상의 성범죄 정보에 대한 자료를 보존하고 해당 정보에 대한 접근을 차단할 수 있는 기술적 조치를 취하도록 명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안 제44조의7제1항제3호의2 신설 및 제44조의7제4항 신설 등)</p>	2022-06-14

소관위	법률안	제안일자
	<p>•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선우의원 등 10인)」</p> <p>현행법에 따라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부호·문언·음향·영상 및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정보 등을 유통할 수 없도록 하고, 방송통신위원회는 이러한 정보에 대해서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정보의 처리를 거부·정지·제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p> <p>그런데, 최근 메타버스 플랫폼 등 온라인 공간에서 부적절하게 성적 인격권을 침해하는 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이를 방지하기 위해 현행 불법정보의 유통금지 조항에 성적 욕망을 위한 목적으로 상대방에게 성적 언동(사람의 인격을 표상하는 캐릭터, 계정 등 디지털 데이터에 접근하는 방식을 포함한다)을 하는 내용의 정보도 포함하여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p> <p>이에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유통금지 되는 불법정보에 성적 욕망 내지 만족을 위한 목적으로 상대방에게 성적 언동을 하는 내용의 정보를 포함하려는 것임 (안 제44조의7제1항제1의2호 신설 등)</p>	2022-06-14
행정안전위원회	<p>•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태호의원 등 10인)」</p> <p>현행법은 벤처기업 등이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한 과세특례를 두어 벤처기업이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에서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과 지역중소기업 종합지원센터가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와 재산세를 각각 감면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모두 2022년 12월 31일에 종료될 예정임</p> <p>그러나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에 대한 벤처기업의 투자를 활성화하여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로 정체된 지역경제의 활성화 및 지방자치단체 세수 확대의 선순환을 도모하고, 지역중소기업의 육성과 일자리 창출, 지역 균형발전에 적극적으로 기여하기 위하여 관련 특례를 계속적으로 유지할 필요가 있음</p> <p>이에 벤처기업과 지역중소기업 종합지원센터에 대한 과세특례의 적용기한을 2025년 12월 31일까지로 3년간 연장하면서, 벤처기업이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에서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의 감면비율을 상향하려는 것임 (안 제58조제4항 및 제60조제4항)</p>	2022-06-10

소관위	법률안	제안일자
문화체육 관광 위원회	<p>• 「콘텐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김승수의원 등 12인)」</p> <p>현행법은 콘텐츠산업의 기반을 조성하고 그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콘텐츠산업의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콘텐츠제작의 활성화 및 융합콘텐츠의 활성화를 위해 정부가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하고 있음</p> <p>최근 4차 산업혁명과 함께 새로운 기술을 기반으로 메타버스 산업 등이 급속하게 성장하고 있으며, 이를 활용한 창의적인 콘텐츠 개발, 발굴 및 제작 등과 관련한 정부의 체계적·선도적인 지원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p> <p>이에 정부가 메타버스 등 신기술을 활용한 콘텐츠산업 활성화와 관련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하여 급변하는 시장 환경에 대응해 신기술을 활용한 콘텐츠 제작 역량 등을 키우려는 것임 (안 제12조의2 신설)</p>	2022-06-16
	<p>•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승수의원 등 12인)」</p> <p>디지털콘텐츠 산업의 급속한 성장이 지속되는 가운데, 정보통신 기술을 통하여 구현한 가상 세계에서 다양한 사회·경제·문화적 활동을 할 수 있는 메타버스(Metaverse)와 인간의 오감을 극대화하여 실제와 유사한 경험을 제공하는 실감형 콘텐츠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음</p> <p>정보통신 기술을 기반으로 하는 디지털콘텐츠 산업이 빠르게 발달하고 있는 가운데, 문화산업의 진흥과 육성을 위한 지원 근거를 두고 있는 본 법률에서도 신기술이 적용된 디지털문화콘텐츠 산업을 지원하기 위한 근거 마련이 시급한 상황임</p> <p>이에 빠르게 발전하고 있는 메타버스와 실감형 콘텐츠를 통한 문화산업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그 근거를 법률에 명시하려는 것임 (안 제2조)</p>	2022-06-16

소관위	법률안	제안 일자
<p>산업통상 자원중소 벤처기업 위원회</p>	<p>•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태호의원 등 11인)」</p> <p>현행법은 부정경쟁행위자나 타인의 영업비밀을 침해한 자에 대해서는 그 행위의 위법 정도에 따라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억원 이하의 벌금부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까지 과(科)하도록 규정하고 있음</p> <p>그러나 법인(기업)이 가담해 부정경쟁행위를 하거나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경영상 정보를 탈취·활용한 경우 해당 기업은 막대한 이익을 얻을 수 있음에도 현행법의 양벌규정에 따라 부정경쟁행위나 영업비밀 침해행위에 가담한 기업에 대하여 해당 행위를 한 자연인과 동일하게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은 형평성에도 어긋나고 기업의 조직적·계획적 위법 행위를 조장할 우려가 있음</p> <p>또한 유사 영역을 다루는 특허권, 디자인권, 상표권 등의 산업재산권 침해행위의 경우 개인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있지만 양벌규정에 따른 법인의 경우 행위자의 3배에 해당하는 3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가중 규정을 두고 있음에 비추어 보면 현행법에 따른 법인의 부정경쟁행위 또는 영업비밀 침해행위에 대한 처벌은 미약한 수준임</p> <p>한편 미국 및 일본의 사례를 보더라도 법인의 영업비밀 침해행위에 대해서는 벌금액을 강화하는 추세로, 이는 영업비밀은 특허권과 같이 권리화가 되어 있지 아니하여 한번 외부로 유출되면 확산이 쉬울 뿐만 아니라 회복하기 어려운 가치 손상을 입기 때문임</p> <p>이에 부정경쟁행위 또는 영업비밀 침해행위 방지 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법인에게는 그 법인 소속 행위자 벌금액의 3배에 해당하는 벌금을 과(科)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부정경쟁행위와 영업비밀 침해행위 방지를 강화하려는 것임 (안 제19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 신설)</p>	<p>2022-06-13</p>
	<p>•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태호의원 등 11인)」</p> <p>현행법은 영업비밀 침해 행위로 인하여 영업상 이익을 침해당한 피해자는 그 침해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이에 대해 법원은 손해배상액을 산정함에 있어 영업상 이익을 침해한 자의 이익액을 피해자의 손해로 추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p> <p>이런 가운데 영업비밀 침해소송은 영업비밀의 취득, 사용 등의 입증 여부가 소송 결과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만 입증의 한계로 인하여 원고의 승소율은 일반민사소송의 절반 수준인 30%에 그치고 있음. 특히 영업비밀 중 생산·제조 방법에 대한 침해의 경우 침해자(피고)의 사업장에서 이루어져 영업비밀 보유자(원고)가 그에 관한 구체적인 침해를 입증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한 구조임</p>	<p>2022-06-13</p>

소관위	법률안	제안일자
	<p>또한 침해소송에서 손해액을 산정함에 있어 피해자가 침해자의 이익액을 입증해야 하는데 침해자가 보유한 영업비밀과 관련된 정보를 피해자가 확보하여 입증하는 것도 현재의 제도상으로는 매우 어려운 형편임</p> <p>한편 최근 개정된 「특허법」 및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에서는 특허권 침해 또는 기술 탈취에 따른 침해소송에서 원고가 주장하는 침해행태를 부인하는 피고는 이를 입증하기 위해 자기의 구체적 사용형태를 제시하는 의무를 부과하고, 침해자가 보유한 증거에 대하여 자료제출명령제도가 도입되어 피해자의 입증부담을 완화한 제도개선이 이루어졌음</p> <p>그러나 영업비밀 또한 특허나 기술처럼 권리자나 보유자의 이익을 보호하는 유사 영역임에도 현행법에는 행위태양 제시 의무제가 부재하고, 자료제출명령제의 경우는 실행의 구체적인 방법이 마련되어 있지 아니하여 영업비밀 관련 분쟁 발생시 피해자의 실질적 구제가 어려운 실정임</p> <p>이에 행위태양 제시 의무제를 도입하는 한편, 소송에서 영업비밀 분쟁 침해의 증명 또는 침해행위로 입은 손해액 산정을 위해 도입된 법원의 자료제출명령제에 대해서는 그 구체적 실행방안을 마련함으로써 영업비밀 침해 분쟁의 효과적인 해결 및 피해자 구제를 강화하려는 것임</p> <p>주요 내용으로는</p> <o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영업비밀 보유자가 주장하는 침해행태를 부인하는 당사자는 자기의 구체적인 행위태양을 제시하도록 함 (안 제11조의2제1항 신설) ② 법원은 당사자가 구체적 행위태양을 제시할 수 없는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주장하는 경우에는 그 주장의 옳고 그름을 판단하기 위하여 그 당사자에게 해당 자료의 제출을 명할 수 있음 (안 제11조의2제2항 신설) ③ 법원은 당사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자기의 구체적 행위태양을 제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영업비밀 보유자가 주장하는 영업비밀 침해행위의 구체적 행위태양을 진실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음 (안 제11조의2제5항 신설) ④ 법원이 자료 제출을 명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자료의 소지자가 자료 제출을 거절할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주장하는 경우 법원은 그 주장의 옳고 그름을 판단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시를 명할 수 있음 (안 제14조의3제2항 신설) ⑤ 법원은 자료 소지자의 제출되어야 할 자료가 침해의 증명 또는 손해액의 산정에 반드시 필요한 때에는 자료 제출 거절의 정당한 이유로 보지 아니할 수 있음 (안 제14조의3제3항 신설) 	<p>2022-06-13</p>

소관위	법률안	제안 일자
	<p>⑥ 법원은 자료 제출 명령을 받은 소지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자료제출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또는 자료의 소지자가 상대방의 사용을 방해할 목적으로 제출의무가 있는 자료를 훼손하거나 이를 사용할 수 없게 한 경우에는 자료의 기재에 대한 상대방의 주장을 진실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음 (안 제14조의3제4항 및 제5항 각각 신설)</p> <p>⑦ 법원의 지정에 따라 자료를 제공받거나 열람한 자가 그 자료를 자료제출명령의 목적과 다르게 사용하거나 다른 자에게 제공하는 등 부당한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 (안 제18조제4항제3호 신설)</p>	
	<p>•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태호의원 등 10인)」</p> <p>현행법은 수탁기업이 물품의 제조를 위탁받은 이후 원재료 등의 공급원가가 변동되어 납품대금의 조정이 불가피한 경우에 중소기업협동조합과 중소기업중앙회가 수탁기업의 신청을 받아 위탁기업과 납품대금의 조정을 협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p> <p>그러나 조정 협의를 신청할 수 있는 요건이 주된 원재료의 가격이 100분의 10 이상 변동되는 경우 또는 노무비가 최저임금인상률 이상으로 상승하는 경우 등으로 지나치게 까다롭고, 수탁기업의 대부분이 중소기업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에 대기업과의 거래 단절과 같은 보복 조치를 우려하여 조정 협의를 신청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어 납품대금 조정 제도가 활성화되기에는 한계가 있음</p> <p>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철광석, 원유, 펄프 등의 가격 급등으로 인하여 원재료를 가공하여 대기업에 납품하는 중소기업의 경영난이 가중되고 있으나 대부분의 중소기업은 원재료의 가격 인상분을 납품대금에 반영하지 못하고 있어, 별도의 조정 신청과 협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 납품대금에 원재료의 가격변화를 자동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납품단가연동제를 도입할 필요가 있음</p> <p>주요 내용으로는</p> <p>① 위탁기업이 수탁기업에게 발급하는 약정서의 내용에 주요 원료의 가격이 100분의 3 이상 상승할 경우에 따른 납품대금의 조정 방법 등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도록 하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표준약정서를 작성하여 위·수탁 기업에게 그 사용을 권고하여야 함 (안 제21조제1항 및 제3항 신설)</p> <p>② 위탁기업이 납품대금을 지급할 때에 주요 원료 가격의 상승이 있는 경우에는 납품대금의 조정이 반영된 금액을 지급하도록 함 (안 제22조제7항)</p> <p>③ 납품대금의 조정이 반영된 금액을 지급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납품대금의 조정이 반영된 금액과 주요 원료 가격 상승 전에 결정된 납품대금 금액의 차액의 2배에 상당하는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 (안 제43조제5항 신설)</p>	<p>2022-06-14</p>

소관위	법률안	제안 일자
	<p>•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권철승의원 등 11인)」</p> <p>현행법은 벤처기업의 원활한 자금 조달 등을 고려하여 일정한 기술평가기관이 산업재산권 등에 대한 가격을 평가한 경우, 그 내용은 상법에 따라 공인된 감정인이 평가한 것으로 볼 수 있도록 특례 규정을 두고 있음</p> <p>그런데, 지식재산권으로 산업재산권과 유사한 저작권에 대해서는 별도의 특례를 두고 있지 않아 등록된 저작권이 재산적 가치를 가지고 있음에도 이를 이용한 현물출자가 불가능한 상황임</p> <p>이에 벤처기업의 원활한 자금 조달 등을 위하여 산업재산권과 유사한 소프트웨어 등 저작권에 대해서도 현물출자 대상으로 포함하도록 명시하려는 것임 (안 제6조 및, 제11조의3 등)</p>	2022-06-15

3. 향후 국회 주요 주간일정(안)

기관	주요 일정		비고
국회도서관	6/20(월)	「최신 외국입법정보」 제196호 발간 - 영국의 장애인에 대한 택시 및 개인임대차량 입법례	도서관 1회의실
	6/21(화)	「최신 정책정보: 국내」 제98호 발간 - 바이든 대통령 방한과 한미정상회담: 성과와 과제 등	
	6/21(화)	「국외 현안리포트」 발간 - 미국 공급망 행정명령(E.O. 14017) 1주년 평가 보고서 (미국, 백악관)	
	6/21(화)	「현안입법 알리기」 - 플랫폼 노동자에 대한 산재보험 적용 근거 마련	
	6/22(수)	「현안, 외국에선?」 제38호 발간 - 미국의 산불대응전략	
예산정책처	6/21(화)	「예산정책연구」 제11권 제2호 발간	
입법조사처	6/20(월)	「이슈와 논점」 보고서 발간 -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현황과 향후 과제	
	6/22(수) 10:00	「의회의 코로나19 위기소통 평가 및 개선방안」 토론회 개최 - 의회의 코로나19 대응 - 정보 전달(위기소통)에 관한 전반적 평가 및 개선과제 검토 - 주최:국회의원 김민석·이용호·신현영·최종윤, 국회입법조사처	국회본청 220호

4. 향후 국회 토론회 및 세미나 주요 일정(안)

일자	제목	주최	장소
6/20(월) 14:00	달라진 시대, 학교의 변화와 교육복지 정책 과제 토론회	장혜영 의원실	의원회관 2소회의실
6/20(월) 14:00	보틀 투 보틀 실현을 위한 정책 토론회	이수진 의원실, 정치하는엄마들 등	의원회관 3세미나실
6/21(화) 10:00	바람직한 5G 이동통신 28GHz 정책 방향 토론회	변재일, 김영식 의원실	의원회관 1세미나실
6/21(화) 10:00	낙태법 개정안 입법을 위한 세미나	조해진 의원실	의원회관 2소회의실
6/21(화) 10:30	초과세수 진상규명과 재정개혁을 위한 전문가 토론회	더불어민주당 초과세수 진상규명과 재정개혁추진단 등	의원회관 8간담회의실
6/21(화) 14:00	온라인 플랫폼 독점규제 위한 미·EU 입법 경쟁	설훈·진선미 의원실, 참여연대 등	의원회관 1세미나실
6/22(수) 07:30	(내일을 바꾸는 미래전략 2024) 김황식 前국무총리에게 듣는다!	김기현 의원실	의원회관 2세미나실
6/22(수) 14:30	반도체 인력양성 방안 이대로 괜찮은가?	조승래·윤영찬· 강득구 의원실 등	의원회관 9간담회의실
6/23(목) 09:00	한류는 한국의 연성권력인가?	하태경 의원실, 백봉정치문화교육원	의원회관 8간담회의실
6/23(목) 09:30	사용후핵연료 관리 특별법안 공청회	김영식 의원실	의원회관 3세미나실
6/23(목) 10:00	국회 입법 폭주 이대로 좋은가? 정책토론회	홍석준 의원실, 범시민사회단체연합	의원회관 2소회의실
6/24(금) 13:30	제3차 경기북부 특별자치도 설치를 위한 정책토론회 - 국가균형발전의 새로운 출발	김민철 의원실, 경기도 인수위원회	경기북부 청사 2층

※ 위 토론회 및 세미나 관련 자료들은 추후 제공 예정

[별첨1] 지난 주 뉴스레터(제139호) 중 국회 토론회 및 세미나 관련 자료 첨부

* 해당 내용을 클릭하시면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국회 소속기관>

기관	주요 일정		비고
국회도서관	6/14(화)	<u>최신 외국입법정보</u> - 미국의 유기성폐자원 에너지 활용 입법례	
예산정책처	6/17(금)	<u>「스마트농업 육성사업 추진현황과 개선과제」 발간</u>	
입법조사처	6/14(화)	<u>「NARS 현안분석」 보고서 발간</u> - 혁신조달의 현황과 개선과제	
	주중	<u>「이슈와 논점」 보고서 발간 (2건)</u> <u>-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제도의 쟁점과 논의과제</u> <u>- 상습적 음주운전자의 가중처벌에 대한 위헌결정례 분석과 개선과제</u>	
	주중	<u>「외국 입법·정책 분석」</u> - 디지털 경제로의 전환에 따른 독일의 경쟁법적 대응과 시사점	

<국회의원실>

일자	제목	주최	장소
6/13(월) 14:00	<u>디지털 시대, 대한민국 협력경제의 길</u> <u>- 실리콘밸리를 넘어 대한민국 스타트업 생태계가</u> <u>나아갈 길</u>	김종민, 유동수, 윤창현 의원실 등	의원회관 1소회의실
6/14(화) 14:00	<u>(제1회) 민간주도 탄소감축 포럼&위원회 출범식</u>	김학용 의원실, SDX재단	국회도서관 강당
6/15(수) 10:00	<u>새정부의 주택시장 정상화를 위한 정책 추진전략</u> <u>토론회</u>	이헌승 의원실	의원회관 1소회의실
6/15(수) 14:00	<u>디지털플랫폼산업의 혁신과 성장을 위한 과제</u>	서병수, 이상민, 권명호 의원실 등	의원회관 2소회의실

법무법인(유) 세종 입법전략자문팀(Legislative and Government Affairs Team)은 기존 명망가, 고위관료 출신의 인재와 함께 국회 및 정부부처 출신의 실무 전문인력들이 유기적으로 구성되어 있는 대관 및 규제대응업무 전문팀입니다. 다양한 네트워크와 풍부한 실무경험을 바탕으로 고객의 요구에 맞춤형 Total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고 자부합니다.

상기 사항에 대하여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거나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에는 언제든지 아래 연락처로 연락을 주시면 더욱 자세한 내용을 제공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특정 분야에 대해 “법률 제·개정 사항과 동향 파악, 정부정책 등에 대한 모니터링이나 Legal 분석” 등이 필요하신 경우에도 연락주시면 최선을 다해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For Questions or Comments

- 백대용 | 변호사 T. 02-316-4630 E. dybaek@shinkim.com
- 박현주 (Hyunju Helen Pak) | 외국변호사 T. 02-316-4212 E. hpak@shinkim.com
- 김성범 | 변호사 T. 02-316-4432 E. sbkim@shinkim.com
- 홍정아 (Claudia Hong) | 외국변호사 T. 02-316-4487 E. cahong@shinkim.com
- 방세희 | 변호사 T. 02-316-1773 E. shbang@shinkim.com
- 노지은 | 변호사 T. 02-316-2573 E. jeroh@shinkim.com
- 서예지 | 변호사 T. 02-316-1787 E. yjiseo@shinkim.com
- 나인선 | 변호사 T. 02-316-1795 E. isna@shinkim.com
- 문응필 | 변호사 T. 02-316-4047 E. epmoon@shinkim.com
- 최유리 | 변호사 T. 02-316-1748 E. yrchoe@shinkim.com
- 성재열 | 변호사 T. 02-316-1777 E. jysung@shinkim.com
- 조성환 | 변호사 T. 02-316-2596 E. suhcho@shinkim.com
- 김은혜 | 변호사 T. 02-316-1736 E. ehkim@shinkim.com

SHIN & KIM

법무법인(유) 세종

법무법인(유) 세종 뉴스레터의 게재된 내용 및 의견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 목적으로 발행된 것이며, 이에 수록된 내용은 법무법인(유) 세종의 공식적인 견해나 구체적인 사안에 관한 법률의견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The content and opinions expressed within Shin & Kim LLC's newsletter are provided for general informational purposes only and should not be considered as rendering of legal advice for any specific matter.